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44
----------	------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11월 2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출요지(서울특별시장)

1. 제출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제출 취지)

○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로페이를 결제시 보조기기센터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고자 하는 내용임.

<보조기기센터 현황>

센터명	위탁법인	위치(면적)	'18년 주요실적(연인원)
동남	(재)푸르메	강동구 고덕로	128,754
동북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구 덕릉로 70길 96	58,780
서남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56,713
서북	(재)푸르메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4,052

※'18년 주요 실적 내역 : 상담평가, 대여, 후원연계, 제작 등

2 주요사항 검토

가. 개정안의 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나.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실적 현황

-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이 제출한 조례 대상 공공시설의 제로페이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8월말까지 104개 시설 총 114,151건의 제로페이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금액으로는 총 41억 원의 할인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월별 제로페이 사용금액을 통해 시민들의 제로페이 이용금액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월 927백만원 → 6월 832백만원 → 7월 1,036백만원 → 8월 1,346백만원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실적〉

(단위 : 천건, 백만원)

구분	계		5월		6월		7월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결제(A)	2,010	28,341	482	7,489	472	6,451	483	7,164	573	7,237
제로페이(B)	114	4,141	28	927	31	832	23	1,036	32	1,346
이용률(B/A)	5.8%	12.4%	5.8%	12.4%	6.7%	12.9%	4.8%	14.5%	5.5%	18.6%
할인금액	500		117		106		120		157	

출처 :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연장 추진계획,

- 동 개정안 대상 시설인 4개 보조기기센터의 제로페이 할인실적을 살펴보면, 14건 178천원으로 전체 결제 건수 대비 제로페이 결제 비율은 18.4%로 나타났음.

〈개정안 대상 시설의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 실적〉

(단위 : 건, 천원)

연번	조례명	시설수	제로페이 결제			제로페이 할인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1	장애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4	14	178	18.4	14	18

※ 비율 : 시설별 제로페이 결제액 / 시설별 전체 결제액 × 100

※ 주 : 비율 = 시설별 제로페이 결제액 / 시설별 전체 결제액 × 10

-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지원사항 1위는 결제금액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으로 나타난 바, 개정안에 따라 제로페이 결제 시 감면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할 것임.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등(20.5%)
-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제로페이, 소비자에게 실질 혜택 제공하고 사용처 확대 노력·사용 편의성 증진 필요」, 서울연구원, 2019

3 종합 검토 의견

- 동 개정안은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시, 보조기기센터 서비스 이용료를 2019년 말까지 감면토록 하던 것을, 2020년 말까지 그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로페이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로페이 이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4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
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11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 31</u> <u>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11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 ----- <u>2020년 12월 31</u> <u>일</u>-----.</p>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 할인을 부칙 제2조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세외수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감면손실액 산출 = '19년 제로페이 이용료 1달 평균 감면액 × 12개월

(단위 : 천원)

구 분	'19. 5월~9월 제로페이 할인액	1달 평균 할인액	'20년 할인 예상액	비고
금 액	25	5	60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주윤극 (02-2133-7362)